

(단위: 건, 원)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11제4항에 따라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[별지 제63호의29서식]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- ①~②: 재화·용역 구매를 위해 선결제 한 구입처(소상공인)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.
- ③~⑤: 결제월별로 건수 및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.
- ⑥ 결제수단란은 현금, 신용카드·직불카드·선불카드, 전자지급수단 중 구매대금을 지급한 결제 수단을 적고, 재화·용역의 선결제 구입처로부터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매출전표, 직불·선불카드영수증, 직불·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, (세금)계산서 중 하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⑦~⑧: 구매월별로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.
- ⑨ 공급받은 재화·용역란에는 공급받은 재화·용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 여러 개일 경우 구매대금이 제일 큰 재화·용역을 대표로 적습니다.

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(을)

① 선결제자	① 상호	
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② 재화·용역 선결제 구입처	③ 상호	
	④ 사업자등록번호	

(단위: 원)

	⑤ 결제일	⑥ 결제금액	⑦ 결제수단		⑧ 구매일	⑨ 사용금액	⑩ 잔액
	합계				합계		
③ 선결제내역				④ 사용내역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9조의11제4항에 따라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- 해당 서식은 재화·용역 선결제 구입처별로 작성합니다.
- ⑦ 결제수단란은 현금, 신용카드·직불카드·선불카드, 전자지급수단 중 대금 지급한 결제 수단을 기재하며, 재화·용역 선결제 구입처로부터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매출전표, 직불·선불카드영수증, 직불·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, (세금)계산서 중 하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